

2017 (국고)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

목/세목	항목	집행기준	집행방법	정산증빙방법	비고
업무추진비/ 사업추진비	식사비 (다과비)	1인 기준 : 최대 30,000원	카드집행	1. 카드영수증 2. 상세내역서	○ 식사비(다과비)는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- 지원금 1천만원 이하(5% 이내) - 지원금 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(3% 이내) - 지원금 3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(2% 이내) ※ 세부 편성은 최종 선정 후 장문원과 협의
여비/ 국외여비	항공료	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	계좌이체 카드집행	1. 입금 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 2. 인보이스 3. E-티켓 4. 여권사본 5. 여권사증(출입국증명면) 또는 탑승권	○ 장애인예술가 국제사업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항공료 - 1~2급 장애예술가 활동보조인 항공료 보조 교통비임
여비/ 국내여비	참가자 교통비	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(실비기준)	계좌이체 카드집행	(계좌이체) 1. 입금 확인증 2. 영수증 (카드집행) 1. 카드영수증 2. 승차권 등	○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 ○ 장애인 콜택시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교통 수단 이용(사업 참가자에게 영수증 수령 후, 해당금액만큼 계좌이체) ○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임
운영비/ 일반수용비	현장 학습비	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, 전시 등의 입장료	계좌이체 카드집행	(계좌이체) 1. 입금 확인증 2. 견적서 3. 전자 세금계산서 (카드집행) 1. 카드영수증 2. 상세내역서	
운영비/ 일반 수용비	사업전담 인력비	한시적 채용 인력비	계좌 이체	1. 입금 확인증 2. 근로대장 3. 근로계약서 4. 원천징수영수증	○ 월 100만원 이내 인건비 편성가능 사업 -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-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-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○ 그 외 사업은 지원금 10% 이내 편성가능 ○ 청각장애예술단체는 수화통역사 전담인력 1인 추가 지원(편성기준 상동)
운영비/ 일반수용비	활동보조인비	보건복지부 활동보조비 단가	계좌이체	1. 입금 확인증 2. 활동보조인 자격증 4. 원천징수영수증	○ 활동보조인 자격증 소지자(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)
운영비/ 일반수용비	점역비	조달청 단가에 기준함	계좌이체	1. 입금 확인증 2. 견적서 3. 전자 세금계산서	
운영비/ 일반수용비	수화통역비	1시간 100,000원	계좌이체	1. 입금 확인증 2. 수화통역사 자격증 3. 원천징수영수증	